

1. 개정이유

소규모 자동차제작자 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및 첨단 기술의 발달로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핵심장치인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간 활성화되지 못한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안전검사를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로 구분 (안 제37조제2항)

나. 자동차 제작자등의 직접 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직접 안전검사 실시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를 신청하거나 시행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37조의 2제3항 및 제4항)

다. 직접 안전검사를 위해서는 제34조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시험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나, 자동차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위하여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라. 전기자동차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고전원전기장치’의 무상수리 요건을 개선하여 소비자를 보호(안 제49조의3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전단 중 “제35조제1항”을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그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의2제3항 중 “실시한”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제작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안전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시행한 경우 (제원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제작자등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 중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제작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자
2. 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제49조의3제1항제1호 중 “및 동력전달장치:”를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로 한다.

제15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안전검사) ① (생략)	제37조(안전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신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기술검토서의 내용, 자동차제원표 등을 확인하는 등의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기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검사시설을 갖춘 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해당 안전검사시설에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그 후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제35조제1항---.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제37조의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 받은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발급할	③ ----- ----- -----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

수 있다.

<신 설>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다만, 법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려는 제작자등(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신 설>

법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한 ---.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제작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안전검사를 신청하였거나 시행한 경우(제원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제작자등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없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① -----

---. -----

----- 제작자등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제작자등은 제34조제3호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제37조제2항에 따른 계속 안전검사

②・③ (생략)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무상수리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상의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6에서 같다)부터 3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6만 킬로미터 이내일 것 2. (생략) ② ~ ⑥ (생략)	를 실시할 수 있다. 1. <u>자동차정비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한 자</u> 2. <u>피견인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u>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49조의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① ----- ----- ----- -----. 1. ----- 동력전달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52호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	--